

관 의 생 략

총무 200_ 836

1971. 9. 16.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연구 및 지도직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재 위임

1. 연구 및 지도직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총무 200_215 (71. 1. 30)로 각도지사에게 위임한데 대하여,
2. 강원도지사는 별첨 사본과 같이 도농촌진흥원장에게 재위임 하였기 압하니 인사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서무 200_ (71. 9. 9) 사본 1부. "곧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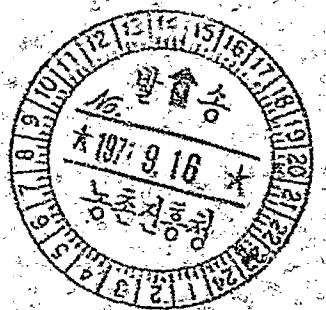
농 촌 진 흥 정 장

수신처

경기,충북,충남,전북,제주도농촌진흥원장, 서울,부산시농촌지도소장,
 나 (-4, 8, 9, 10).

제	보 임 의 장	인 사 과 장	내 무 장	제 1 과 장	시 장	본 간

문 사 처 리 인	필수 일시 71-9-17.	제출 일시 10-57	장 관 1763
필수 번호			



상 본

강 원 토

사무 200_

1971. 9. 9.

수신 농촌진흥원장

참조 사무국장

제목 연구 및 지도직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 제 위임

1. 농촌진흥원장의 권한인 연구 및 지도직 4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이 71. 1. 29차로 도지사에게 위임 되었으나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 적절한 인사 운영을 기하도록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인사 처리 요강 제7항 마호 (진흥청 총무 200_ 218 (1. 1. 29) 에 의거 귀직에게 임용권을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제 위임처인 인사 운영에 전점을 기하도록 함.

가. 시행일 : 1971. 9. 10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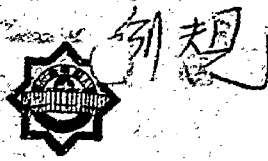
나. 위임 조건

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은 농촌진흥청 총무 200_ 218 (71. 1. 29)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인사 업무 처리 요강에 의거 처단 함.

첨부 :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인사 업무 처리 요강 1부. "끝"

강 원 토

계 사



要旨
質問

全羅南道知事

公務員이 辭表를 提出하였을시 任命
權者가 受理할 意思로 決裁하
고나 解任發令을 하지 않았을 經過
解任의 法的 効力 ?

- 가) 解任發令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
辭表提出者의 申請이 有效한 限
- 나) 辭表를 受理할 意思로 決裁하였다
할지라도 退職發令을 하지 않았을 限
効力이 發生하지 않는다

回答 內務部長官

- 나) 孰이 妥當한